

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<p><b>전차용역 평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 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</li> <li>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</li> </ul>	<p><b>전차용역 평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 여부, <del>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</del></li> <li>- <del>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</del> <b>삭제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해용역이 차지하는 비율 규정을 추가할 경우 전차용역수행에 따른 평가이점이 희석되므로 해당 개정내용을 삭제.</li> <li>※ 전차용역은 현재 평가방식(경과기간, 공동수행시 지분율만큼만 인정-전차용역 지분율 × 당해용역 지분율)으로도 차별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해용역이 차지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을 추가할 경우 전차용역수행의 평가가 무의미해짐.</li> <li>※ 기본계획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하위계획과의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)으로 단순비교할 수 없음. 또한 전차평가시 공동수급방식일 경우 신용도, 벌점 등 타 항목의 평가방식과 같이 당해용역의 지분율로만 평가함이 타당함.</li> </ul>
<p><b>참여기술인 실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단,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~100%를 인정한다.) 또한,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(단,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%를 적용할 수 있음)</li> </ul>	<p><b>참여기술인 실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단, <del>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~100%를 인정한다.)</del> <b>삭제</b> 또한,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(단,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%를 적용할 수 있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에는 주 공종 외에 구조, 토질·지질분야에 한해 80~100% 인정하고 있으나 전 분야에 적용할 경우 해당 전문분야에서 실적관리를 한 기술자와의 변별력이 없어지므로 개정내용을 삭제</li> </ul>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<p><b>용역수행성과 중 인정기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(최근 3년간 평균점수)에 따라 평가하며,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</li> </ul>	<p><b>용역수행성과 중 인정기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(최근 5년간 평균점수)에 따라 평가하며,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성과평가에 대한 자료축적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최근 5년간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</li> </ul>
<p><b>용역수행성과 중 점수부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“1.8” 또는 “1.6”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(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)</li> </ul>	<p><b>용역수행성과 중 점수부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“1.6” 또는 그 이하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(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지 1.6점 또는 그 이하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공고시 해당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토록 함</li> <li>※ 용역성과가 우수한 업체와의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배점부여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</li> </ul>
<p><b>업무중복도 중 평가제외항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,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, 사후모니터링, 해양환경조사는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</li> </ul>	<p><b>업무중복도 중 평가제외항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,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, 사후모니터링, 해양환경조사 및 기타 조사용역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무중복도 산정시 설계용역이 아닌 조사용역은 중복도평가에서 제외</li> <li>※ 설계용역이 아닌 조사를 위주로 하는 용역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TV조사, 관로조사, 탐사 등 조사용역 - 조사전문업체에서 수행하고 전체 과업기간 중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으므로 중복도평가지 조사용역도 제외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